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박물관단지재단 전환 및 운영체계 정비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21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882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총괄 검토	4
나. 국립박물관단지재단 명칭 변경 및 개별박물관 범위 (안 제1조 및 제2조 등)	8
다. 주무관청 및 협의·감독 체계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0조)	22
라. 재단 이사회 구성 변경 등(안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31
마. 정관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및 제6조)	34
바. 부칙	36

I.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882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5. 6.

다. 회 부 일 : 2026. 5. 7.

2.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다수의 국립박물관들이 집적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문화수요 충족, 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2023년 12월 어린이체험관(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7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2029년 국립디자인박물관 및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될 예정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2023년 4월 설립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어린이체험관(어린이박물관), 수장고, 지원시설에 한정된 관리로 그 업무가 제한적이고, 박물관단지 내 각 박물관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한 운영 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본 법률안은 기존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

박물관단지재단'으로 전환하며 통합운영 대상 개별박물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조직과 사업 범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 법 개정을 통해 각 박물관의 고유한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박물관단지 차원의 통합 운영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인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조).

나. 국립도시건축박물관·국립디자인박물관·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을 정의하고 어린이체험관을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으로 하며, 각 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무관청으로 함(제2조).

다. 재단 정관에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관 변경시 건설청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5조).

라.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고,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은 건설

청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재단의 업무 확대에 따라 이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8명 이내, 감사 1명의 임원을 둠(제7조).

바. 주무관청은 소관 박물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0조).

4.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이하 “국립박물관단지”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의 국립박물관을 하나의 공간에 집적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시설임.

【 국립박물관단지 사업개요 】

-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문S-1)
- 규모·기간: 부지 77,064m², 연면적 84,788m² / 2016년 ~ 2029년
- ※ 박물관단지 기본계획 수립(‘11.12), 예타 통과(‘15.2), 마스터플랜 수립(‘16.12), 1단계 착공(‘20.12)
- 총사업비: 4,900 / 토지매입비 683, 시설비 3,865, 시설부대경비 352(억원)
- 주요시설: 5개 개별박물관, 통합지원시설(통합수장고, 통합운영본부동 등)

구분	건립시설 (연면적 총 84,788m ²)		‘20	‘21	‘22	‘23	‘24	‘25	‘26	‘27	‘28
1단계	통합지원시설(1차)*, 어린이박물관(행복청)	16,928m ²	착공	공사	공사	준공					
2단계	도시건축박물관(국토부), 통합지원시설(2차)**	31,548m ²	공모	설계	설계	설계	착공	공사	준공		
3단계	디자인박물관(문체부),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유산청)	16,170m ² 9,995m ²		공모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착공	공사	준공
4단계	국가기록박물관(기록원)	10,147m ²					공모	설계	설계	착공	공사

* 통합지원시설(1차): 통합운영본부동(100%)·통합수장고(50%)·주차장(일부)

** 통합지원시설(2차): 통합수장고(50%), 지하주차장(잔여)

※ 자료: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는 2011년 「국립박물관단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였고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등 개별박물관의 순차 개관이 예정되어 있음.

현행법은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¹⁾.

현재 국립박물관단지 내 국립어린이박물관만 개관하여 운영 중이고, 다른 개별박물관은 건립 또는 설계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향후 개별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할 경우 현행 지원센터 중심의 운영체계만으로는 박물관단지 전체의 체계적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안정적인 조직 기반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고, 국립박물관단지의 구성요소와 개별박물관의 범위를 정하며, 개별박물관의 주무관청을 명시하고, 재단의 사업범위, 임원 구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법	개정안
명칭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
단지 구성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	개별박물관, 통합수장고, 지원시설
개별박물관	-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국립디자인박물관 ◦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주무관청	건설청장	- 재단: 건설청장 - 개별박물관: 주무관청
조직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이내, 감사 1명	이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8명 이내, 감사 1명
재정지원	국가 출연·보조	개별박물관 경비는 해당 주무관청이 출연·보조
운영체계	건설청장 승인	건설청장 승인 및 주무관청 협의

※ 현행법 및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국립박물관단지는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박물관과 지원시설이 하나의 단지에 집적되는 구조이므로,

개정안은 국립박물관단지의 단계적 확대에 대응하여 박물관별 고유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설관리, 수장공간 운영, 홍보 등 공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은 개별박물관의 고

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립박물관단지의 통합운영을 실현할 경우
보다 풍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조문별로 검토하고자 함.

나. 국립박물관단지재단 명칭 변경 및 개별박물관 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u>운영을 지원</u> 하기 위한 <u>통합운영지원센터</u> 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운영 및 지원</u> 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을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u>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u>다음 각 목의 박물관(이하 “개별박물관”이라 한다) 및 통합수장고, 지원시설</u> ---.
<신설>	가. <u>국립도시건축박물관</u> : 도시·건축 분야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도시·건축 관련 유산의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교육·체험하는 박물관

<신 설>

<신 설>

<신 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나. 국립디자인박물관 : 디자인 문화의 진흥과 국민의 디자인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박물관

다.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 디지털 국가유산 향유를 통한 가치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국가유산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및 전시·교육·체험하는 박물관

라.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 증진 및 미래 융합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린이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박물관

<삭 제>

3. “통합수장고”란 -----.

<삭 제>

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u>국립 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u>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 <u>국립 박물관단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u> 은 ----- -.
제4조(설립) ① <u>지원센터</u>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4조(설립) ① <u>재단</u> 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 <u>지원센터</u>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정관) ① <u>재단</u>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13.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u>
② <u>지원센터</u> 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u>재단</u> 이 ----- ----- -----. <u>이 경우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u>
제6조(사업) ① <u>지원센터</u>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① <u>재단</u> 은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u>	5. <u>국립박물관단지</u> ----- -----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8. <u>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u>	8. <u>국립박물관단지</u> -----
9. <u>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u>	9. <u>국립박물관단지</u> -----
10. <u>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u>	10. <u>국립박물관단지</u> -----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 -----
11. 다른 법령에 따라 <u>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u>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1. ----- <u>국립박물관단지</u> <u>가</u> ----- -----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u>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u>	1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신설>	② <u>개별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지원센터의 임원</u>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u>재단</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u>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u>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u>재단</u>----- ----- ----- -----.
② <u>지원센터의 상임임원</u>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u>지원센터의 직원</u>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u>재단의 상임임원</u>----- ----- <u>재단의 직원</u>----- ----- -----.
제12조(이사회) ① <u>지원센터의</u>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지원센터에</u>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이사회) ① <u>재단의</u> ----- ----- <u>재단에</u> ----- -----.

② (생 략)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u> ---- ----- ----- -----.
④ ~ ⑥ (생 략) 제13조(재원) ① <u>지원센터</u>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 3. (생 략) 4. <u>지원센터</u> 운영에 따른 수익금 5. (생 략)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u>지원센터</u>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재원) ① <u>재단</u>----- -----. 1. ~ 3. (현행과 같음) 4. <u>재단</u> ----- 5. (현행과 같음) ③ ----- <u>재단</u>----- ----- ----- -----.
④ (생 략)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u>지원센터</u>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u>재단</u>----- -----.
제15조(차입금) <u>지원센터</u>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차입금) <u>재단</u>은 ----- ----- -----.
제16조(후원회) ① <u>지원센터</u>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후원회) ① <u>재단</u>은 ----- ----- ----- -----.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u>지원센터</u>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지원센터</u>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② ----- ---- <u>재단</u>----- -----. ③ ----- ----- ----- <u>재단</u>-----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u>지원센터</u>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u>지원센터</u>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 <u>각 주무관청</u>----- ----- ----- -----. ② <u>재단이</u> ----- ----- ----- ----- ----- -----.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u>지원센터</u>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u>지원센터</u>에 파견된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재단</u>----- -----. ③ ----- <u>재단</u>-----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감독) ① 건설청장은 <u>지원센터</u>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u>지원센터</u>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지원센터</u>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 의무) <u>지원센터</u>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u>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u>가 아닌 자는 <u>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u>지원센터</u>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지</u>	----- -----. 제20조(감독) ① ----- <u>재단을</u> ----- ----- -----. ② ----- <u>재단</u>----- ----- -----. ③ ----- <u>재단</u>----- ----- ----- -----. 제21조(비밀엄수 의무) <u>재단</u>----- ----- -----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u>개별박물관 및 재단이</u> ----- ----- <u>제2조제1호 각 목의 박물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재단 또는</u> -----. 제23조(「민법」의 준용) <u>재단</u>----- ----- -----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재</u>
---	---

<u>원센터</u>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략)	<u>단</u>----- ----- -----. 제26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위반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 부칙 제2조(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운영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① 명칭 변경

개정안은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현행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법인의 명칭에 “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상 지원센터도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²⁾,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³⁾, 개정안에 따라 “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공통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에 맞게 운
영법인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조직 역할 확대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임.

② 국립박물관단지 및 개별박물관 정의 등(안 제2조)

개정안은 “국립박물관단지”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39조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
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개별박물관 및 통합
수장고, 지원시설⁵⁾로 규정하고,

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민법」의 준용)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5) “개별박물관, 통합수장고 및 지원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및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등 4개 박물관을 “개별박물관”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법은 “국립박물관단지”를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로 규정⁶⁾하면서, 국립박물관단지에 포함되는 개별 국립박물관의 명칭을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계시설”을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으로 정의하고, 이 중 수장고와 어린이체험관⁷⁾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⁸⁾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어린이체험관(국립어린이박물관)만 개관하여 운영 중이고 다른 박물관들은 건립 또는 설계 단계에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 7) 현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체험관”은 법 제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박물관” 명칭이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관련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는 “국립어린이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8)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체험관(어린이박물관)뿐만 아니라 향후 개별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구성과 운영대상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국립박물관단지의 통합운영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현행법상 “수장고”는 실제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5개 박물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할 목적으로 “통합수장고”라는 명칭으로 계획·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명칭을 “통합수장고”로 변경함으로써 시설의 실제 기능과 운영방식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행복청에 따르면 국립박물관단지 내에는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및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을 개별박물관의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가기록박물관도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입지하는 시설인 만큼 이를 재단의 통합운영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박물관 집적에 따른 시설관리 등 통합운영의 효과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행복청은 2027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통합운영에 합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디자인박물관('29년 개관 예정),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29년 개관 예정)에 대하여 법안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립국가기록박물관과 관련하여, 현재도 유사한 시설을 직접 운영 중이고 기록물 활용을 위한 박물관이나 전시관 운영은 국가기록원의 근거 법률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기록원의 중요 업무이므로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은 포함(참여)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통보한 사항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임⁹⁾.

한편 개정안은 통합수장고를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를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이 개별박물관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¹⁰⁾,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이 통합수장고의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9)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개정안과 관련한 행복청의 의견조회 공문(2026.2.9.) 내용에 “(중략) 귀 기관 소관 박물관도 **개정안에 포함(참여)하고자 할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생략)”라고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은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은 참여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결정·통보하였다고 함(2026.4.7.).

10)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박물관단지는 개별박물관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보존서고와 복원·복제 부서가 있는데 전시 기록물은 보유량의 극히 일부이고, 필요한 만큼만 복제하여 전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합수장고의 활용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임.

결론적으로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을 개별박물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기관들 간의 합의 내용, 국가기록원 직영에 따른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립박물관단지의 구성요소로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연계시설¹¹⁾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지원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바,

유사 입법례¹²⁾를 참고하여 지원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셋째, 개정안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연계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국립박물관단지”로 정비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6조제1항제7호13)의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을 “국립박물관단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국립박물관단지”를 개별박물관, 통합수장고 및 지원시설로 정의하면서, “통합수장고”는 다시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정의규정 간 순환적 구조가 발생하는바,

통합수장고의 정의에 “국립박물관단지”라는 상위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개별박물관의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관리하는 시설”로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행복청은 개정안이 현행 국립박물관단지의 정의를 개별박물관, 통합수장고 및 지원시설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다. 주무관청 및 협의·감독 체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 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주무관청”이란 개별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개별박물관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국토교통부장관 나. 국립디자인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 국가유산청장 라.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 건설청장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 -----.
②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재단이 ----- ----- ----- -----. 이 경우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사업) ③ ----- ----- ----- ----- -----, 다만, 건설청장이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

제13조(재원)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 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 ① 재단-----
-----.

② ----- 재단-----

----- 있으며, 이 경우 개별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이 출연 또는 보조한다.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
-----.

② -----

---. 이 경우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

③ -----

----- 건설청장과 각 주무관청-----
--.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

국가는 <u>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u> ② <u>지원센터가</u>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① <u>건설청장은 지원센터</u>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u><신 설></u>	-- <u>각 주무관청</u>----- -----. ② <u>재단이</u> ----- -----. 제20조(감독) ① ----- <u>재단을</u> ----- -----. ④ <u>각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관 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내역을 이사장과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 부칙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재단은 이 법 시행 당시 각 주무관청에 속한 권리·의무를 개별박물관 개관 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8조(국립박물관단지 업무 이관) 이 법에 따른 건설청장의 업무는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이관한다.	

개정안은 각 개별박물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주무관청

으로 정의하고, 정관 변경, 개별박물관 수익사업, 사업계획서·예산서, 감독 등 재단 운영에 관하여 건설청장과 각 주무관청 간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0조).

① 주무관청의 정의(안 제2조)

개정안은 개별박물관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주무관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 개정안상 개별박물관별 주무관청 】

개별박물관	주무관청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국가유산청장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개별박물관별 주무관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각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행복청은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박물관별로 주무관청을 명시하여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입장임.

② 주무관청과의 협의 절차(안 제5조, 제6조, 제14조)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설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된 정관 변경, 사업계획서·예산서,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건설청장이 승인하기에 앞서 개별 박물관의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별박물관의 사업·예산 등은 해당 주무관청의 정책 판단과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개정안은 정관 변경 및 사업계획·예산 승인 과정에서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개별박물관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상 건설청장 및 주무관청의 권한 구조 】

구분	건설청장	주무관청
정관 변경 (안 제5조제2항)	정관 변경 인가	사전 협의
개별박물관 사업 (안 제5조제1항제13호, 안 제6조제2항)	정관 인가	정관 변경 과정에서 협의
위탁사업 (안 제6조제1항제14호)	위탁사업 승인	-
개별박물관 수익사업 (안 제6조제3항)	수익사업 승인	사전 협의
재정지원 (안 제13조제2항)	재단 사업·운영 경비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개별박물관 사업·운영 경비 출연 또는 보조
사업계획·예산서 승인 (안 제14조제2항)	사업계획서·예산서 승인	협의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안 제14조제3항)	사업실적·결산서 제출받음	사업실적·결산서 제출받음
지도·감독 등 (안 제20조)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등	소관 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자료: 개정안 내용 재구성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를 개별박물관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만큼, 정관 변경, 사업계획·예산 승인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개별박물관별 주무관청의 협의·검토·관리 권한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③ 주무관청의 출연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더하여, 개별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이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에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교부되고 있는데¹⁴⁾,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의 공통 경비는 국가가 출연 또는 보조하고, 개별박물관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주무관청이 직접 출연 또는 보조하는 구조임.

이는 개별박물관의 사업 책임과 재정 부담 주체를 일치시키고, 재정 지원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전문성을 개별박물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제2항은 개별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재단의 사업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¹⁵⁾,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주무관청의 개별박물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재정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재단의 공통경비와 개별박물관 사업경비를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 주체와 범위를 건설청장과 주무관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복청은 각 박물관이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소관 사무, 회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④ 주무관청의 감독(안 제20조)

현행법상 건설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15) 개정안 제6조제2항은 “개별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¹⁶⁾,

개정안은 각 주무관청에도 소관 개별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 보고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치내역을 이사장 및 건설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무관청이 소관 개별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소관 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청장은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므로, 재단을 구성하는 개별박물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건설청장과 각 주무관청의 개별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중복되거나 사안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1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감독) ①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의 일반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별박물관의 고유사업 관련 사항을 구분하여 건설청장과 각 주무관청의 감독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 안 제20조제4항은 “각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관 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 수식하는 대상이 “소관 박물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¹⁷⁾.

17)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각 주무관청은 소관 개별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재단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무관청은 그 조치내역을 이사장과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재단 이사회 구성 변경 등(안 제7조, 제9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7조(임직원) ① <u>지원센터</u> 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7조(임직원) ① <u>재단</u> ----- ----- 5 <u>명 이내 및</u> ----- <u>8명</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u>지원센터</u> 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 <u>재단</u> <u>을</u> -----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u>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u>정관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u> ---- ----- -----.
제12조(이사회) ① <u>지원센터</u> 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지원센터</u> 에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이사회) ① <u>재단</u> 의 ----- ----- <u>재단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u>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 <u>정관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재단의 업무 확대에 대응하여 이사회의 구성 중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정원을 확대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현행법상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및 제12조).

【 이사회 임원 구성 】

구분	현행	개정안
이사장	1명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1명	경영본부장 + 4개 박물관 관장(5명 이내)
비상임이사	공무원 1명 + 외부전문가 6명(7명 이내)	공무원 4명 + 외부전문가 4명(8명 이내)*
감사	1명	
이사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

* 4개 박물관 주무관청 국장급 공무원+주무관청 추천 전문가 각 1명

※ 자료: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할 경우 재단 및 개별박물관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한 규모의 상임이사를 갖추는 것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상임이사가 현행 1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될 경우 현행법상 이사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의 순위 및 지정 방식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행복청은 개별박물관의 통합운영에 따라 임원 증원이 필요하고, 상임이사의 복수 임명에 따라 이사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정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는 이사회의 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현행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안 제7조 중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의 시행 시기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정관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정관) ① <u>지원센터</u>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u><신설></u> ② <u>지원센터가</u>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5조(정관) ① <u>재단</u>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u> ② <u>재단이</u> ----- ----- ----- -----. <u>이 경우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u>
제6조(사업) ① <u>지원센터</u>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u><신설></u>	제6조(사업) ① <u>재단은</u> ----- -----. ② <u>개별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개정안은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에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설청장이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하며(안 제5조), 개별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이는 향후 개별박물관을 재단의 형태로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개별박물관별 사업을 재단 운영체계 안에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개정안은 재단 정관에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박물관의 사업은 해당 주무관청의 정책·예산·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으로,

정관을 통해 개별박물관의 사업 범위가 정해질 경우 내부 규범에 불과한 정관에 의해 각 주무관청의 권한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가 개별박물관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별박물관의 사업은 해당 주무관청의 책임 아래 정하도록 하고, 재단 정관에는 개별박물관의 운영지원, 공통기능 수행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바.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운영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조(통합운영지원센터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직원의 근로조건 및 계속근로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각 주무관청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무관청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재단은 이 법 시행 당시 각 주무관청에 속한 권리·의무를 개별박물관 개관 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각 주무관청은 소관 박물관의 개관 전까지, 관련

개 정 안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의 정원 및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으로 구분된 사람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8조(국립박물관단지 업무 이관) 이 법에 따른 건설청장의 업무는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이관한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 국가 소유 물품의 무상양도, 각 주무관청에 속한 권리·의무의 승계,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의 재단 직원 임용 특례 및 국립박물관단지 업무 이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러한 부칙 규정은 지원센터가 재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률관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조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부칙 제7조는 각 주무관청이 소관 박물관의 “개관 전”까지 관련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은 이미

개관하여 운영 중이므로, 이미 개관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임용 대상자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부칙 제8조는 “이 법에 따른 건설청장의 업무”를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행복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 정책의 주무부처이고, 국립박물관 정책과의 체계적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이후 재단 관련 총괄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함.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청장은 정관 승인, 위탁사업·수익사업 승인, 사업계획·예산 승인, 재단 지도·감독 등 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이를 부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할 경우 이관 대상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따라서 재단 관련 총괄업무를 장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이관 시점에 본문상 건설청장의 권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부칙 제6조는 각 주무관청에 속한 권리·의무를 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계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불

분명한 측면이 있음.

유사 입법례¹⁸⁾에서는 승계 대상을 해당 박물관의 건립·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로 한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개정안도 승계 대상을 “소관 개별박물관의 건립·운영에 관한 권리·의무”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79

18)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497호, 2023. 6. 20.>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의무(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립박물관단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